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45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5. 30 선고 2023나14542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5 선고 2022가합1028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방인석, 남지혜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양

담당변호사 이상철

변론종결 2024. 4. 18.

판결선고 2024. 5. 30.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8. 25. 선고 2022가합10287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2022. 4. 7. 체결한 공증인 D 작성 2022년 제65호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을 C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각 “피고 A”를 “피고”로, 각 “피고 B”을 “B”으로, 각 “피고들”을 “피고 및 B”으로 각 고친다.

○ 제7쪽 마지막 행의 “받은 점”을 “받은 점, 피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C 부부가 아산시 P 전 1,124㎡ 외 9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는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토지를 C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10필지 중 6필지는 C의 형 O 명의이고, 4필지는 C의 처 B 명의였다는 것이다1)), 위 각 토지는 2021. 1. 22. 임의경매절차 개시결정을 거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Q) 2021. 12. 28. 매각되었으며, 피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4. 7. 이 사건 제1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초하여 2022. 4. 2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던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오, 판사 장현석, 판사 이주일

1) 2024. 4. 17. 자 피고 제출 탄원서 참조.